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안 제3조)

-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비용추계의 방법(안 제4조)

-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

-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표시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

다. 비용추계의 기간(안 제5조)

-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

라.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
-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
- 주민청구조례안도 시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3. 조례안 : 불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등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구미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2. 비용추계의 전제
-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구미시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11.7.14.개정, 2011.10.15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